

보도시점 2023. 12. 22.(금) 배포 2023. 12. 21.(목)

[2023년 법제처 정책 돋보기]

어려운 법령, 한눈에 이해되는 440개 그림으로 본다

- 12월 22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추가 콘텐츠 117개 제공 -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2023년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사업으로 개발한 시각 콘텐츠 117개를 12월 22일부터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추가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란 국민의 일상생활에 밀접하지만 이해하기 어려운 법령 속 용어나 문장에 그림·사진·표 등 시각 콘텐츠를 함께 제공하여 법령을 이해하기 쉽도록 돕는 서비스다.

법제처는 2021년 시범운영 사업으로 「건축법」, 「도로교통법」, 「고용보험법」, 「소득세법」 및 그 하위법령 등 12건에 대한 431개의 시각 콘텐츠를 제공했다.

또한, 2022년 11월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용자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 분석 결과를 토대로 2023년에는 부동산·국토·조세·노동 분야의 법령 32건을 선정하여 440개 시각 콘텐츠를 개발했다. 그 중 323개 시각 콘텐츠를 지난 10월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1차 제공했고, 이번에 117개를 추가로 제공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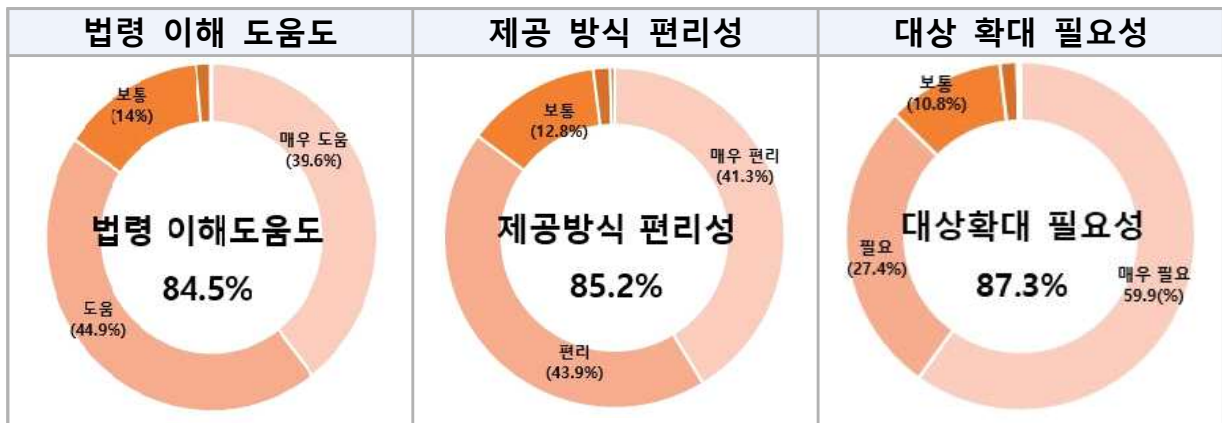
이번에 추가로 제공하는 시각 콘텐츠 중 대부분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및 그 하위법령 등 부동산 및 조세 분야 콘텐츠로, 1차 탑재 시에는 제공되지 않았던 새로운 법령의 콘텐츠이다.

그 예시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대항력 등의 경우 어려운 한자어 등이 포함된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그림으로 표현하였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대항력

대상 조문	시각 콘텐츠
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로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② ~ ⑥ (생략)	주택임대차 대항력 발생요건 5월 1일 주택의 인도 임차인이 임차주택을 점유한 상태 5월 1일 주민등록 행정복지센터(방문) 또는 정부24(온라인)에서 전입신고 5월 2일 0시 대항력 발생 전입신고 완료 후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 발생 안 됩니다! 당장 집을 비워주세요. 새로운 건물로 임대인 임차인 *임대차계약기간 잔존 대항력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는 힘 ▼ 등기 없이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면 효력 발생 제3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당사자 외 아래 ①, ②, ③ 등에 해당하는 사람 ▼ ① 임차주택의 양수인 ②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사람 ③ 그 밖에 임차주택에 관해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 * 본 콘텐츠는 2023년 7월 19일 기준이며, 어떠한 법적효력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법제처

법제처는 지난 11월 17일부터 12월 6일까지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용자 1,466명을 대상으로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시각 콘텐츠가 ‘법령 이해에 도움이 된다’(84.5%), ‘콘텐츠 제공 방식이 편리하다’(85.2%)고 답하여 국민의 높은 만족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한눈보기 서비스 법령이 확대되어야 한다’(87.3%)고 답하여 내년도 사업 확대 필요성도 함께 파악하였다.



한편, 만족도 조사에 참여한 이용자 1,466명이 향후 우선적으로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법령 분야는 사회복지(49.9%), 보건(41.1%) 분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24년에는 사회복지·보건 분야를 포함하여 국민 수요에 맞는 다양한 분야의 시각 콘텐츠 480건을 개발하여 제공할 예정이다.

이완규 처장은 “2021년 시범운영 사업을 통해 개발한 콘텐츠를 포함하여 올해까지 44개 법령 대상 871개 콘텐츠를 국민께 제공하고 있다”라면서, “앞으로도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용자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여 기존 콘텐츠 품질관리뿐만 아니라 국민의 법령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법령용어순화팀	책임자	팀 장	안민선	(044-200-6852)
		담당자	사무관	유수연	(044-200-6855)



참고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콘텐츠 예시

1 [부동산 분야]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대항력 발생요건 >

대상 조문	시각 콘텐츠
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② ~ ⑥ (생략)	주택임대차 대항력 발생요건 5월 1일 주택의 인도 임차인이 임차주택을 점유한 상태 5월 1일 주민등록 행정복지센터(방문) 또는 정부24(온라인)에서 전입신고 5월 2일 0시 대항력 발생 전입신고 완료 후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 발생 대항력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는 힘 등기 없이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면 효력 발생 제3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당사자 외 아래 ①, ②, ③ 등에 해당하는 사람 ① 임차주택의 양수인 ②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사람 ③ 그 밖에 임차주택에 관해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 * 본 콘텐츠는 2023년 7월 19일 기준이며, 어떠한 법적효력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7조제3항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의 범위 >

대상 조문	시각 콘텐츠
제7조(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의 범위 등) ① ~ ② (생략) ③ 하나의 상가건물에 임차인이 2인 이상이고, 그 각 보증금중 일정액의 합산액이 상가건물의 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각 보증금중 일정액의 합산액에 대한 각 임차인의 보증금중 일정액의 비율로 그 상가건물의 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할한 금액을 각 임차인의 보증금중 일정액으로 본다.	임차인이 복수인 경우 우선변제 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의 의미 예시 상가건물(서울특별시 소재) 상가건물가액 1억원 임차인 1 보증금 3,000만원 임차인 2 보증금 2,000만원 임차인 3 보증금 1,000만원 상가건물가액의 1/2 5,000만원 < 임차인들의 보증금 중 일정액의 합산액 6,000만원 5,000만원 × 3/6 = 25,000,000원 임차인 1 2/6 = 16,666,667원 임차인 2 1/6 = 8,333,333원 임차인 3 각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 본 콘텐츠는 2023년 1월 1일 기준이며, 어떠한 법적효력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 조세 분야

< 「부가가치세법」 제37조제3항 납부세액 등의 계산 >

대상 조문	시각 콘텐츠
제37조(납부세액 등의 계산) ① 매출세액은 제29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30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납부세액은 제1항에 따른 매출세액(제45조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에서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공제되는 매입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매입세액은 환급세액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사업자가 최종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세액 = A - B + C A: 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B: 제45조, 제47조 및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공제세액 C: 제60조 및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	사업자가 납부 또는 환급받을 세액 계산 방법 예시 - 부가가치세에 대한 과세표준: 9천만 원 - 대손금액: 1천 1백만 원 - 매입세액: 6백만 원 - 신용카드 등 공제되는 매입세액: 3백만 원 - 신용카드 발급금액(매출): 5천만 원 - 가산세액: 90만 원 1. 매출세액 계산: 과세표준 9천만 원 × 세율 10% = 매출세액 900만 원 (법 제30조) 2. 납부/환급세액 계산: (매출세액 - 대손세액) - 매입세액 -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900만 원 - (1천 1백만 원 × 10/110) - 600만 원 - 300만 원 = -100만 원 납부/환급세액 = -100만 원 3. 공제세액: 50만 원 (제45조, 제47조 및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규정) 4. 가산세: 90만 원 (제60조제2항제1호) 최종 납부/환급받을 세액 계산: 매출세액 900만 원 - 공제세액 50만 원 + 가산세 90만 원 = 최종 납부/환급받을 세액 940만 원 * 본 콘텐츠는 2024년 1월 1일 기준이며, 어떠한 법적 효력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법제처 알아두세요! - 대손금: 외상 매출금, 반품어음, 대출금 따위의 매출 채권 가운데 회수할 수 없게 된 금액 (국립국회, 「금융회계법」 제45조제1항) -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부가가치세법」 제45조제1항

< 「국세기본법」 제10조제9항 서류 송달의 방법 >

대상 조문	시각 콘텐츠
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 ① ~ ⑧ (생략) ⑨ 납세자가 2회 연속하여 전자송달(국세정보통신망에 송달된 경우에 한정한다)된 서류를 열람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송달의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다만, 납세자가 전자송달된 납부고지서에 의한 세액을 그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2. 12. 31.> ⑩ ~ ⑪ (생략)	전자송달 신청의 철회 간주 * 본 콘텐츠는 2023년 4월 1일 기준이며, 어떠한 법적 효력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법제처 알아두세요! - 전자송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 「국세기본법」 제8조제1항 - 전자송달의 신청·철회방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조의2제1항